

◆ 서울특별시조례 제7373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9월 26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의 경우 : 10세제곱미터 이내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여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라사랑 정신과 보훈의식을 고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대해 월 10세제곱미터 이내의 하수도사용료를 면제함.(제34조제1항제10호)

나. 시행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의 시행 시기는 2020년 1월 1일 부터로 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신설함(부칙).

◆ 서울특별시조례 제7374호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9월 26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포상금 지급대상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현행 조례는 만19세 이상으로 서울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형평성 측면이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활성화라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 판단되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을 불특정 다수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을 불특정 다수로 확대함.(제3조제1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7376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9월 26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